

보도시점 2025. 9. 15.(월) 14:30 (2025. 9. 16.(화) 조간)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 실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26년안 433억원 신설)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26년안 370억원)하며,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 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중상해재해(요양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26년 8천개소)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재정	인력	기술	교육
10인 미만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현장수요 맞춤형지원	지역 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지원	중상해재해 재발방지 컨설팅 신설 및 사후지원 연계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제공
산재예방지원 2조 723억원('26년(안), +4,733억원)			

②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최근 외국인 노동자, 특고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26년 200명)하여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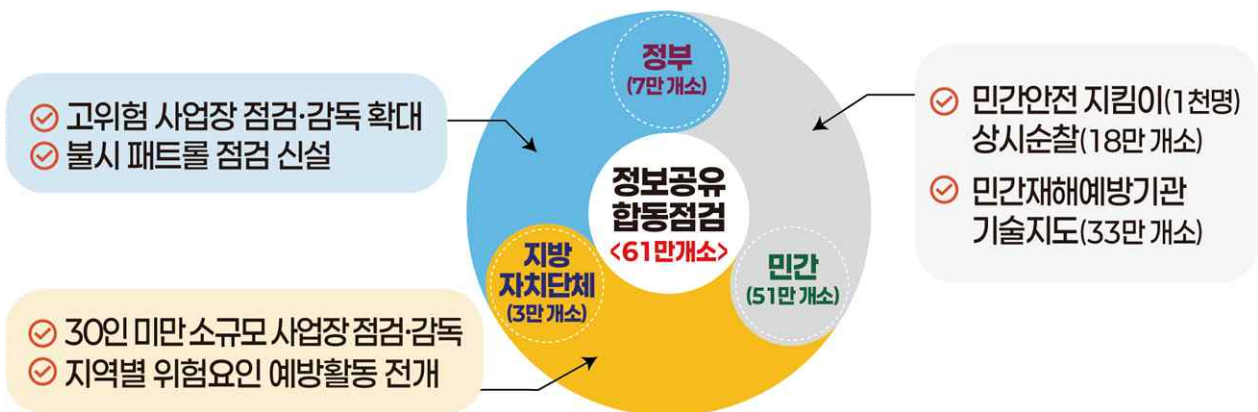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 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26년안 30억원)한다.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안전·직무훈련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제한 강화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200명)	·산안법 적용(직종, 보호조치) 확대 ·교통사고 예방 지원(무상정비 등) ·유상운송보험가입 및 교육 강화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 ·직종별 안전보건가이드 개발 및 안전 교육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개소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을 ’28년 7만개소로 대폭 확대(’25년 2.4만)한다. 지방자치단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지붕·별목 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26년안 143억원 신규)한다.

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18만 개소)은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26년 1천명)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



④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터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외국인에게 적합한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CEO)·재직자 대상 산업안전 사전교육, 직업계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②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① 도급 계약시 적정비용,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 원청의 예방 의무 강화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한다. 또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산업안전보건법)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②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산재예방 배점(現 0.5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③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국토부, 노동부)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건설산업기본법)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를 명확히 한다.

④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9.4.)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의 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산업안전보건법)한다.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방안 마련 (예시: 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노동자 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노동자의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사업장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 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③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①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승진시 가산점 부여)하고,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

②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 업종별 특화 교육을 운영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을 통한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기관은 참여 배제 등 퇴출을 유도한다.

③ 안전 의식·문화 확산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8.29~)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26년안 111억원 신설)이다. 또한 산재예방은 노사 공동의 이익인 만큼,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안전문화 활동(예: 위험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④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①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現 2~5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한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②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고 조사·수사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산업안전보건법)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총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8804)
		담당자	서기관	윤종호 (044-202-8811)
			서기관	김정탁 (044-202-8881)
			사무관	김건우 (044-202-8815)
담당 부서 <공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윤경 (044-202-8850)
		담당자	사무관	이은상 (044-202-835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김은화 (044-202-8903)
	고용노동부 건설산업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담당자	사무관	김원호 (044-202-8936)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제 (044-202-8950)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2-8952)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8550)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044-215-855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책임자	과 장	문경호 (044-215-4130)
		담당자	사무관	현원석 (044-215-4131)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구 (044-215-5210)
		담당자	사무관	이종민 (044-215-5211)
			사무관	정병아 (044-215-5212)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대원 (044-215-545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044-215-5451)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준철 (044-215-5550)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044-215-5553)
	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한준 (044-215-5650)
		담당자	사무관	김희운 (044-215-5654)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지만석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안시준 (044-205-4509)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4-205-3771)
		담당자	사무관	홍성권 (044-202-3783)
		담당자	사무관	예병찬 (044-202-378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3504)
		담당자	사무관	황성필 (044-201-3507)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담당자	사무관	곽병철 (044-201-3574)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책임자	팀 장	최정원 (044-201-4152)
		담당자	사무관	마철훈 (044-201-41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우진 (044-202-6740)
		담당자	사무관	안명균 (044-202-46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정순 (044-202-6130)
		담당자	사무관	양승주 (044-202-61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영길 (044-202-6420)
		담당자	사무관	박병규 (044-202-6427)
	법무부 공공형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형원 (02-2110-3280)
		담당자	검 사	이수영 (02-2110-353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우성훈 (044-203-4220)
		담당자	사무관	이수창 (044-203-422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책임자	과 장	백진주 (044-202-3650)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202-3653)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4-7440)
		담당자	사무관	정승화 (044-204-7442)

담당 부서 <공동>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종선 (044-200-4945)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선희 (044-200-4946)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02-2100-2644)
	법제처	책임자	팀 장	정세희 (044-200-6740)
	미래법제혁신기획단	담당자	서기관	오정애 (044-200-6741)
	조달청	책임자	과 장	성기석 (042-724-7334)
	시설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만 (042-724-7085)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윤정근 (02-3150-2070)
	강력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김상승 (02-3150-2770)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

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재예방지원 **2조 723억** ('26안)
→ 재정·인력·기술 통합 지원

- ☑ [재정] 추락·끼임·부딪힘 예방+스마트 안전장비
- ☑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확대
- ☑ [기술] AI 안전기술 R&D + 현장 활용 확산

2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 ☑ 안전리더 확산
- ☑ 안전역량 향상 직업훈련 지원
-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제한 강화

특고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現 14개 직종)
- ☑ 배달·택배 등 맞춤형 지원

고령자

- ☑ 고령친화 환경 개선비용 지원
- ☑ 특화 안전교육 확대 제공

3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원청책임 강화

- ☑ 적정 공사비용 보장
- ☑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하도급 개선

- ☑ 불법하도급 점검 확대
- ☑ 적격 수급인 선정 강화

+

공공기관 솔선수범 → 모범사례 현장 확산

- ☑ 안전관리 평가 강화 + 유책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4

산재예방을 위한 일터 민주주의를 확대하겠습니다.

알 권리

-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참여 권리

- ☑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도입
- ☑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의무화 (노동자대표 추천)

피할 권리

- ☑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5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부

고위험: 7만개소

- ☑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 ☑ 불시 패트롤 점검

지방자치단체

30인+: 3만개소

- ☑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 ☑ 지역 특화 예방 활동

민간

영세: 51만개소

- ☑ 안전지킴이+ 민간재해예방기관
- ☑ 영세사업장 상시순찰

6

노동안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예방 인프라 확대

- ☑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
- ☑ 감독관 인력 확충·전문성 제고
- ☑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우수 민간재해예방기관 육성

안전문화 확산

- ☑ 안전일터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신설
- ☑ 대상별·체험형 교육 등을 통한 생명안전 감수성 제고

7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 [과징금] 연간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 과징금 부과 도입
- ☑ [영업정지·공공입찰] 중대재해 반복발생 시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공공입찰참가 제한 추진
- ☑ [금융] 여신심사(대출), ESG 평가·스튜어드십코드에 중대재해 발생 확대 반영

취약계층 집중지원, 실효성있는 제재로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재예방지원 2조 723억원('26안) → 재정·인력·기술 통합 지원

재정: 안전환경 조성

- 10인미만 사업장 특화 추락·끼임·부딪힘 예방지원 신설('26안 433억, 자부담 10%)
-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26안 370억)

인력: 안전관리 역량 확대

- 지역산단 등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협업 기반)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확대



기술: 부처 협업 AI 안전기술 R&D 추진('26) + 현장활용 확산

연구개발 기반 구축

- 사업 기획·발굴지원 (과기부)
- 안전보건 데이터 공유 (노동부)



현장 적용 기술·제품 개발

- 중소 제조업 (중기부)
- 사고 다발 10대 업종 (산업부)
- 건설업 (국토부)



실증·현장 확산 지원

- 스마트 안전 장비 성능 표준·실증
- 재정지원으로 연계 현장 확산(노동부)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 ('26년 200명)
-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 사망사고 발생 시 외국인 고용제한 강화

특고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보호조치 확대(해 14개 직종)
- 배달라이더 안전모 착용 등 점검 확대, 유상운송보험·안전교육 의무화
- 택배·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도입 추진

고령자

- 고령친화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26안 30억)+특화 안전교육 +직종별 안전작업 가이드 보급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과징금

- 연간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 과징금 부과 도입
-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 (산재기금에 편입)

영업정지·
공공입찰

- 중대재해 다수 반복 건설사는 영업정지·등록말소 요청이 가능토록 확대
-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참가 제한+낙찰자 선정평가(감정 확대 등) 강화

금융

-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대출) 기준·대출약정에 중대재해 발생 확대 반영
- ESG평가·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 중대재해 관련 지표 추가

산업안전의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도급 시 원청의 예방의무 강화

- ✓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발주자)
- ✓ 충분한 민간공사기간 산정기준 확립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포함)
- ✓ 산업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집중 점검

하도급 개선

- ✓ 불법하도급 관계부처 합동 단속 정례화
- ✓ 산재예방능력 적격 수급인 선정토록
의무 내용·절차 명확화



공공기관이 산재예방 솔선수범 → 모범사례 현장 확산

- ✓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있는 공공기관장 해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분야' 배점 대폭 상향(現 0.5점)
- ✓ 지방공기업 안전관리 수준평가 도입·확대(現 17개소 시범 운영)

산재예방을 위한 일터 민주주의를 확대하겠습니다.



알 권리

-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사고재발 방지
-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안전투자 등 공개)



참여 권리

- ✓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現 개별사업장 노사만 참여)
- ✓ 노동자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피할 권리

- ✓ 사업주에게 작업중지·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부당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노사정이 함께 안전 일터를 만들어 나갑니다.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 민간안전 지킴이(1천명)
→ 상시순찰(18만 개소)
- 민간재해예방기관
→ 기술지도(33만 개소)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 지역별 위험요인 예방활동 전개



노동안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산재예방 인프라 확대·전문성 강화

정부·지방

-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30인↓)
- 감독관 인력 확충·전문성 제고

민간

-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경력 맞춤형 직무교육+고위험 업종 특화교육
- 우수 민간재해예방기관 육성: 컨설팅 지원 + 평가체계 개선

▶ 안전 의식·문화 확산

국민 산업안전 생활화

-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운영(온라인·모바일 기반, '25.8.29~)
- 산재발생 위험 등 적발·신고 시 포상금 신설 (1건당 최대 500만원)

안전보건 교육 확대

- 공공분야·외국인·사업주·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 VR·동영상 등 체험형 콘텐츠 확대 + 안전 체험교육 활성화

안전인식 확산

-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등과 함께 안전문화 활동 실천
(예: 위험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